## 범죄 신고 요령

-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, 112로 신고하면 경찰로부터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>신고할 때는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시고 언제·어디서·어떻게 피해를 당했으며, 범인의 인상·특징·휴대품·인원·도주 방향 및 교통수단 등을 침착하게 진술합니다.
- ▶112 신고는 휴대전화(영상통화 가능), 일반전화, 공중전화로 할 수 있으며, 공중전화 긴급통화(빨간색 긴급통화 버튼+112) 이용 시, 동전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며 범죄가 아닌 다른 긴급 상황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외국인이 112 신고 시, 3자 통역 서비스(경찰관-통역-신고자) 방식으로 범죄(피해) 신고 접수
- >전화 통화가 곤란한 경우 '112 긴급신고 앱' 또는 '문자'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※ '112 긴급신고 앱'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
- > 어지럽혀진 범죄 현장은 증거의 확보를 위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보존하고, 경찰관이 현장을 살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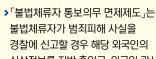


## 도움 요청 전화번호

범죄 신고 및 긴급전화		
112		
117		
119		
118		
1366		
1577-1366		
기타 생활민원		
1345		
110		
1330		
1331		
132		
129		
1388		

## 체류 외국인 지원 정책

●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체류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「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

신상정보를 지방 출입국·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.

>대상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## 【형법상의 범죄】

살인, 상해·폭행, 과실치사상, 유기·학대, 체포·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강간·추행, 권리행사방해, 절도·강도, 사기·공갈

### 【특별법상의 범죄】
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, 직업안정법(제46조)

- •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
-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범죄(피해) 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·NGO 단체 등을'외국인 도움센터'로 지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 ▶ 이용절차

- 1. 외국인 범죄 피해(민원) 발생
- 2. 외국인 도움센터 신고 또는 상담
- 3. 외사경찰 접수·상담
- 4. 경찰서 또는 해당기관 통보·처리
- > 외국인 도움센터를 방문하여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생활 중 불편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 센터 운영 자가 외사경찰관에게 통보하고, 신고 또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.



### ▶ 범죄신고 또는 상담 내용별 조치

- •폭행·가정폭력·학교폭력·사기(고소·고발) 등 형사사건 관련 신고는 경찰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
- •임금체불·산업재해·체류자격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·여성가족부·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며, 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안내

※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장소는 가까운 경찰서 외사계로 문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● 범죄(피해)예방 교육과 운전면허 학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>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
- •다문화가족지원센터 · 근로현장 · NGO 단체 등 외국인들이 모인 장소에 직접 방문, 결혼이주민 · 외국인근로자 ·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춰, 자주 발생하는 범죄 사례 및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'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'을 운영하고 있으며
- •운전면허 학과시험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를 통한 '외국인 운전면허교실'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(3개 언어로 교재제공)

## ▶ 운전면허시험 관련 문의

•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: 1577-1120 (www.safedriving.or.kr)

•학과시험: 3개 언어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) 응시 가능

- ※ 범죄예방교실과 운전면허교실은 가까운 경찰서 외사계로 문의하여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
-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범죄(피해)신고 및 민원 상담 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통역기관	상세 내용
관광통역 <b>안내전화</b> (1330)	<ul> <li>주관부서: 한국관광공사</li> <li>운영시간: 3자 통화 가능 / 영·중·일 24시간 / 기타 5개어 08~19시(365일)</li> <li>통역언어: 영, 중, 일, 러시아, 베트남, 태국, 말레이, 인도네시아 (8개어)</li> </ul>
<b>다누리콜센터</b> (1577-1366)	• 주관부서 : 여성가족부 • 운영시간 : 3자 통화 가능 / 영·중·베·필 24시간 / 기타 9개어 08~21시(365일) • 통역언어 : 영·중·일·러시아·베트남·태국·몽골· 필리핀·캄보디아·우즈벡·라오스·네팔 (12개어)
외국인종합 안내센터 (1345)	• 주관부서 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 정책본부 • 운영시간 : 3자 통화 가능 / 영·중 09~22시 / 기타 17개어 09~18시(평일만) • 영·중·일·러시아·베트남·태국·인니·몽골·필리핀· 캄보디아·아랍·네팔·프랑스·스페인·미얀마· 방글라데시·싱할라·파키스탄·독일 (19개어)
BBB코리아 (1588-5644)	•주관부서: 비영리 사단법인(민간) •운영시간: 3자 통화 가능(앱) /24시간(365일) •통역언어: 영·중·일·러시아·베트남·태국·말레이시아· 인니·몽골·아랍·프랑스·스페인·포르투갈·스웨덴· 폴란드·이탈리아·독일·터키·인도·스와힐리어 (20개어)

한국어 www.police.go.kr

















##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

- 폭행·상해·협박·주거침입·재물손괴·감금·강요·공갈 등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거나, 가입·활동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.
- 칼·쇠몽둥이·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 해서는 안됩니다.
- 돈을 걸고 도박을 해서는 안되며,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도박행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.
- 길에 세워진 자전거 등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 이라도 가져가는 경우,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한 해외 송금행위는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.
- 마약류를 제조·밀반입하거나 소지·투약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받으며,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.
- >경찰청은 ▲불법 마약류 공급 사범 ▲외국인 마약류 사범 ▲인터넷(다크웹)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17세 이상 외국인은 항상 여권·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, 위반 시 벌금(100만원 이하) 이 부과됩니다.
- >만약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신분을 속이려고 할 경우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
- 불법 촬영, 성 착취물 전송 등의 행위는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.
- >신체 접촉이 없더라도, ①인터넷·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수치심·혐오감을 일으키는 말·사진을 전송 하는 행위 ②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·유포하는 행위 ③불법 촬영물을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















## ● 자동차·오토바이·전동킥보드 운전 시 다음의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.

- >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· 오토바이 ·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.
- >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처벌 받습니다
- >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자동차(일명 대포차)를 운행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



## ●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.

- >담배꽁초, 껌,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.
- >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, 금연장소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.
- >오토바이 ·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.
- >전동킥보드의 경우 2인 이상이 탑승하면 안됩니다.
- >도로를 건널 때는 육교나 횡단보도(녹색신호)로 건너야 합니다.



# 생활 속의 범죄예방 및 대응 요령

#### ● 사기(불법 다단계 판매, 전화금융사기, 스미싱, 인터넷사기 등)

- > 불법다단계: 일반적인 도·소매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,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이되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업체의 회원 또는 판매원가입 권유를 거부하세요.
- •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고, 사재기·강제구매· 대출 등을 유도하는 경우
- •아르바이트, 재택 부업 및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
- ·상품이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·과장 광고하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

#### ▶ 등록된 합법 업체 여부 확인 문의

- •공정거래위원회 www.ftc.go.kr, 1670-0007(유료)
- •직접판매공제조합 www.macco.or.kr, 02-566-1202
- •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.kossa.or.kr, 02-2058-0831~8
- >전화금융사기: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이체· 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계좌·카드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대응하지 않습니다.
- ※ 사기단의 하부조직인 현금인출책, 콜센터 텔레마케터 등의 역할도 사기범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받습니다.

### ▶ Voice Phishing 피해 사례

- 가족(자녀)이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유도하여 납치했다며 속이고 돈을 요구
-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 및 개인정보 유출 명목 으로 돈을 요구
- ·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,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
- 카드사·통신회사 사칭하여 대금 연체 빙자하며 돈을 요구
- >스미싱: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지인으로부터 온 메시지 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 확인하고,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 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.
- ▶인터넷 사기: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거래 전 상대방의 정보(전화·계좌 번호)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※ 경찰청(www.police.go.kr) 또는 사이버캅(모바일 앱)을 통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이력 검색 및 피해 신고 가능

#### ● 가정폭력·데이트폭력

- >가정폭력·데이트폭력이 발생할 경우, 주저하지 말고 경찰을 포함하여 친척· 이웃·친구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.
- ※ 사진·진단서 등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, 여성단체·쉼터 등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상담(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/ 다누리콜센터 1577~1366)

### ● 아동실종·유괴

- >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잘 아는 척하면서 데려가거나 또는 강제로 데려가려 할 때는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칩니다.
- >아이에게 본인 이름·나이·주소·전화번호·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, 외출 시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,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 둡니다.

### ● 학교폭력

- >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· 협박 ·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·정신·재산에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학교폭력 피해시 주저하지 말고 즉시 선생님 · 부모님 · 경찰에게 알리도록 합니다.
- ▶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, 위험한 장소는 가능한 피하도록 하고 폭력배에게 금품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당했을 경우,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.

### ● 성범죄(강간·강제추행, 불법 촬영, 디지털 성범죄 등)

- >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에 신속히 신고해 주세요.(신고전 씻지 않고 입었던 속옷과 옷을 그대로 보관할 경우 범인검거에 도움이 됩니다.
- >범인의 특징이나 생김새 등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어 두세요.
- >주변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얘기를 들어주고, 1577-1366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.

#### ● 절도(빈집털이, 소매치기, 날치기 등)

- >장기외출이나 휴가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정기 배달물이 집 앞에 쌓이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, 귀금속이나 현금 등 귀중품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>사람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·시장 등 혼잡한 곳에서는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, 소지품을 들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> 금융기관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청원경찰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.
- ※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정보 앱인 '폴케어 앱'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유로드 후 사용 가능